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1,016,429	10,530,493
일반회계	327,604,997	9,828,150
특별회계	23,411,432	702,343
기타특별회계	23,411,432	702,3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9,810	601,794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305,058	9,15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75,464	5,264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415,653	42,470
복지기금특별회계	249,000	7,470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17,000	3,51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089,447	32,68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98,49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분한도액은 7,969,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호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